

석사학위논문

마약류 범죄의 실태 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2005년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국 제 마 약 학 과

마약치료·재활전공

최 정 일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이 상 환

마약류 범죄의 실태 분석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위 논문을 국제마약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6월 일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국 제 마 약 학 과

마약치료·재활전공

최 정 일

최정일의 국제마약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정함

2005년 6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目 次

국문요약

第 1 章 序 論	1
第 1 節 연구목적	1
第 2 節 研究範圍와 構成	4
第 2 章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 폐해	6
第 1 節 마약류의 개요	6
I. 마약류의 정의	6
1. 마약	9
2. 향정신성의약품	13
3. 대마(大麻)	17
第 2 節 마약류 투약의 폐해	18
I. 신체적 폐해	19
II. 정신적 폐해	19
III. 합병증	19
1. 흡입시	20
2. 주사 사용시	20
3. 복용시	20
4. 기타	20
第 3 章 마약류 범죄의 개관	21
第 1 節 마약류 범죄의 개념	21
1.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유엔 협약(UN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Psychotropic Substances)에서의 정의와 사용례	22
2. 일본의 정의와 사용례	23

3. 우리나라의 정의와 사용례	24
4. 본 논문의 정의와 사용례	28
第 2 節 마약류 범죄의 특성과 유형	28
I. 마약류 범죄의 특성	28
II. 마약류범죄의 유형	29

第 4 章 한국의 마약류 범죄의 동향 및 규제정책에

대한 기초적 고찰

第 1 節 한국사회의 마약류범죄의 변천과정	32
I. 마약	32
II. 대마	34
III. 향정신성 의약품	34
第 2 節 우리나라의 마약류 규제법규	35
I. 규제법규 현황	35
1. 해방 이전(일제하 시대)	35
2. 1950년대	36
3. 1960년대	37
4. 1970년대부터 1980년대	37
5. 1990년대 이후	39
II. 마약류 규제법규	40
1. 형법	40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41
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41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2

第 5 章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실태 및 분석

第 1 節 마약류 범죄분석	43
1. 마약류 범죄의 발생 및 검거상황	43
2. 범죄별 범죄자 성별	44
3. 마약류범죄자 직업별 현황	45

4. 마약류범죄자 내·외국인별 현황	48
5. 마약류범죄자 전과관계	48
6. 마약류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49
7. 마약류범죄자중 재범자의 재범기간	50
8. 공범관계	51
9. 범행동기	52
10. 범죄자 교육정도별	52
11. 범죄자 종교	53
13. 범죄자 구속·불구속 조치사항	54
14. 마약사범외의 범죄자 마약류 상용여부	55
第 2 節 마약류 범죄의 최근 동향	55
第 6 章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58
第 1 節 법·制度的인 對應 方案	59
1. 법률의 정비 및 마약류 분류방법의 개선 필요성	59
2. 치료보호제도의 보완	61
3. 교정시설내의 치료체계 요구	62
第 2 節 수사제도의 개선 방안	63
I. 전담 수사체제 운영 및 전문화	63
II. 수사기법의 개발	64
第 3 節 실질적인 예방·홍보활동의 필요성	65
第 4 節 국제적 협력제제 구축	66
第 7 章 結論	67
參 考 文 獻	72
ABSTRACT	78

표 목 차

<표 1> 형법상의 금지행위와 벌칙	40
<표 2> 마약류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44
<표 3> 마약류범죄자 성별 분류	44
<표 4> 마약류 범죄자 직업별현황(자영업)	45
<표 5> 마약류 범죄자 직업별현황(피고용자)	46
<표 6> 마약류 범죄자 직업별현황(전문직 종사자)	47
<표 7> 마약류 범죄자 직업별현황(기타)	47
<표 8> 마약류 범죄자 내·외국인별 분류	48
<표 9> 마약류 범죄자 전과 관계	49
<표 10> 마약류 범죄자 전회처분 결과	49
<표 11> 동종재범자의 재범기간	50
<표 12> 이종재범자의 재범기간	51
<표 13> 공범관계	51
<표 14> 범행동기	52
<표 15> 범죄자 교육정도별	52
<표 16> 범죄자 종교	53
<표 17> 범죄자 생활정도·혼인관계 및 부모관계	53
<표 18> 범죄자 구속·불구속 조치사항	54
<표 19> 범죄자 마약류 상용여부	55

국문 요약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마약안전지대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에서도 '마약단속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나라'로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IMF이후 사회적 불안으로 최근 신종 마약류 밀반입이 급증하고 학생과 주부를 포함한 마약사범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01년 대검찰청에 마약부를 신설하고, 2002년 경찰청에 마약수사과를 신설하여 마약류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나 마약사범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마약투약사범에 한하여 처벌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연구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만 실무에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마약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단순 투약자나 의존자에 대해서는 처벌위주의 단속방식을 지양하고,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행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은 치료완료 후 검사 및 상담을 권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마약류 사범중 재범자가 8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방 및 홍보업무의 양적·질적 확대와 함께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의 통합과 전문화가 요구된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방교육은 약물오·남용과 관련하여 술·담배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형식상 교육에 그치고 있다.

마약류사범의 수사는 경찰, 검찰, 세관,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어 대형화 국제화의 유형을 띠는 마약거래조직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간의 기획수사와 정보의 공유에 있어서도 각 수사기관의 공과의 다툼이 생길 경우 각 기관간 공조를 기대하기 힘들고 수사기관의

분산화는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약범죄 수사 전담체제(Task Force)의 설치 운영과 수사요원에 대한 전문화 교육의 실시로 마약류 수사업무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전국적인 조직과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 마약수사를 포함한 범죄수사 전반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강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범행동기별 유형을 살펴보면 유혹과 호기심에 의한 경우가 전체의 16%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 마약사범중 주부와 학생이 96명과 34명, 의사가 55명에 이르고 교수 및 종교가, 공무원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 사회 전 계층에 확산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암수범죄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우리사회는 이미 심각한 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마약류범죄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마약류범죄에 대처하는 올바른 방안을 강구하는데 하나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이다.

第 1 章 序 論

第 1 節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마약을 거래하거나 섭취하는 것은 물론 단지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약사범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심지어 마약을 섭취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할 만큼 엄격한 마약규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마약류를 투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약류범죄에 대한 수사기록은 사람들이 마약류를 투약하게 되는 동기가 매우 다양함을 보여준다. 환각 작용에 의한 도취감을 느끼려고 마약에 빠지는가 하면, 성 접촉에 따른 쾌락을 높이려고 마약에 빠지기도 한다. 피로회복 혹은 체력유지를 위해 마약류를 복용하기도 하며, 진통 혹은 치료효과를 기대하고 마약류를 찾기도 한다. 범죄를 앞두고 두려움을 극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찾는 사례도 있고, 친구 혹은 선후배의 강요에 의하거나, 금지의 위반에 대한 우쭐감에서 마약류를 투약하는 사례도 있다. 그 밖에, 예술인이 창작력을 높일 목적으로 혹은 연예인이 인기에 대한 중압감을 벗어나기 위해 마약류에 빠지는 사례도 있다.¹⁾

그동안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분리되어 왔던 우리 나라는 1999년부터 마약류 검거사범이 10,000명을 넘어서면서부터 확산의 비등점²⁾인 20을

1) 한성대학교(2002), “마약류 불법유통과 규제전략” 『21세기 한국 마약정책의 새 방향』, 서울 : 제일인쇄사, p.144

2) 마약류 범죄계수는 인구 10만명당 마약류범죄로 단속된 인원을 계수화한 것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자료는 아니며, 마약류범죄계수가 ‘비등점’을 넘으면 마약류 확산에 가속도가 붙고, 투약자 계층이나 마약의 종류, 공급조직 등 여러 측면에서 질적 변화가 일어나 결과적으로 단속과 치료 등을 통해 투약자와 밀거래자를 통제할 수 있는 ‘마약 통제시대’에서 ‘통제불가(不可)시대’로 넘어가는 ‘빅뱅

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으며, 마약류 투약계층 또한 과거 전통적 직업군이던 유흥업소 종사자·연예인 등 특수한 계층뿐만 아니라 사회지도층인 대학교수·의사는 물론이고 평범한 가정주부까지 사회 전반의 구성원에게 확산되는 추세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³⁾ 마약⁴⁾은 미량으로도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며 그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여 사용을 중단하면 격렬한 금단증세를 일으켜 마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며, 내성으로 말미암아 사용하는 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육체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 폐인이 되게 하는 물질이다. 마약류의 사용은 그것을 사용하는데 시간을 보내게 됨으로서, 개인의 사회참여 회피와 이로 인한 열등감을 초래하여 인격의 파탄과 인간 관계의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그 개인을 사회구성원으로부터 고립시켜 마약류 사용에 더욱 의존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데 1차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의 노동력 상실은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중독은 가정의 틀을 깨뜨리며, 중독자는 마약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강도, 절도, 매춘에도 적극성을 띠게 되며, 마약류 사용

(Big Bang)현상'이 일어난다.

- 3) (최근 각종 마약류가 농어촌까지 침투하고, 일반시민들에게도 확산되어 마약남용인구가 최소 3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의 마약퇴치 정책연구』 p.14.
- 4) 우리사회에서는 그 동안 의존성이 있으면서 오·남용되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마약'또는 '마약류'라 지칭해왔으며 보통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을 총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마약'이란 앵속(양귀비), 아편 및 그 제제와 이에 유사한 약리작용 및 중독작용이 있는 약물을 말하며, '마약류'란 마약을 포함하여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일컫는 개념으로 마약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

:이병기(1994), “마약류 사범의 실태 및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1호(통권 제17호)』. pp. 129-130.

후 나타나는 환각 및 흥분작용에 의한 폭력적 행동은 폭력과 살인 등 2차 강력범죄를 야기하기도 한다.

2002년 정부는 '마약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단순 투약자나 의존자에 대해서는 처벌위주의 단속방식을 지양하고,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제도를 적극 도입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치료 완료 후 검사 및 상담을 권고사항으로 규정하여 놓은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에서도 드러나듯이 치료 및 사후관리가 원만히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과 마약치료 및 재활 전문가의 부족 등 약물사범에 대한 치료 재활과 관련한 처우 프로그램들은 여러가지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IMF이후 사회적 불안과 향락적 사회 풍조로 인하여 최근 신종 마약류 밀반입 및 학생과 주부를 포함한 사회전반의 구성원에게 마약류가 확산되고 있으며 1999년에 이르러 마약류 사범이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사범에 대한 단속 및 수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예방 및 홍보업무,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과 상담 및 남용예방·홍보업무, 청소년에 대한 각종 예방 교육 및 치료재활에 대한 정책수립과 시행이 담당부처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측면에서 효율성의 저하는 물론이고 전문인력 수급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경제성장의 그늘 속에서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유흥업소 종사자 등 특수계층에 국한되었던 마약류 사용자가,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류층 및 중간층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사용사범을 중심으로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하여 봄으로써 마약류 사용사범의 예방을 위한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第 2 節 研究範圍와 構成

지난해 말 대마를 규제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우리 헌법상의 행복 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 심판제청이 신청되었으며 최근에는 대마초의 유해성이 논란이 되어 마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에 관한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국가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마약류 남용확산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 정기조사 등이 실시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곤란하고 마약류에 대한 약리작용과 폐해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마약류에 대한 이론적 고찰(마약의 정의와 약리작용 및 폐해)과 우리나라 마약류사범의 역사적 변천과정 및 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규제정책, 예방·홍보정책과 그 실효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하나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으며 이에 특히 문제되는 마약투약사범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고찰은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리 실정에 맞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예방 대책)을 강구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마약류사범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정밀한 경험적 조사와 전문적인 설문조사, 참여관찰,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수행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제약과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로 관련 주제에 대한 선행 연구논문과 문헌조사,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한 자료들을 기술적인 접근방법(descriptive approach)과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하는 비교·분석적인 접근방법(comparative approach)을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접근방식과 편제를 택하였다.

제2장에서는 마약류의 종류와 약리작용 및 그 피해를 간략하게 기술하였

다. 제3장에서는 마약류범죄의 정의와 사용례 및 마약류 범죄의 특성과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의 사범의 변천과정과 마약류 규제법규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경찰청 및 대법전과 한성대학교 교재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 5장에서는 우리나라 마약류사범의 실태를 분석 하였으며 그 방법은 경찰청 마약범죄 동향지와 검찰청 마약부 등 수사기관의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2003년(1. 01~12. 31)에 전국 각급수사기관(검찰, 경찰, 특사)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검거통계원표·피의자통계원표)중 마약범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제6장에서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법·제도적 측면과 수사제도의 개선 방안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마지막 7장 결론에서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으로 지금까지 마약류사범에 대한 실태 분석 작업을 기초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하여 최소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류의 근절을 위하여 전문수사체제와 정부의 마약퇴치를 위한 통합대책기구 신설을 촉구하였다.

第 2 章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 폐해

第 1 節 마약류의 개요

I. 마약류의 정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약이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마약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마약의 개념이다. 마약속에는 마약, 환각제, 중추신경자극제(흥분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제에서도 마약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마약속에 마약이 있는 것이다. 마약(narcotics)이란 용어는 무감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narko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수면 및 혼미를 야기시켜 동통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그동안 '마약'이라는 용어가 좁은 의미의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총괄하는 의미로 혼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첫째,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둘째,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셋째,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 넷째,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

또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라 함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

나. 양귀비·아편 및 코카엽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또는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다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⁵⁾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3. 제2호 가목의 양귀비·아편·코카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양귀비"라 함은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를 말한다.

나. "아편"이라 함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코카엽"이라 함은 코카관목(에리드록시론속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 다만, 에크고닌·코카인 및 에크고닌알카로이드가 모두 제거된 잎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향정신성의약품"이라 함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⁶⁾ 또는 남용⁷⁾의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

5) 약물의존(Drug dependency)이란 마약류 및 약물을 지속적, 주기적으로 사용한 결과, 사용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변화를 일으켜 사용자가 마약류 및 약물 사용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상태를 말한다.

- 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나.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 또는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 또는 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이나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 내지 라목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 또는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대마"라 함은 대마초(칸나비스사티바엘)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제외한다.⁸⁾

-
- 6) 약물오용(Drug misuse)이란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나 의사의 처방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방된 약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7) 약물남용(Drug abuse)이란 의학적 상식, 법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이탈하여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거나 과잉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정의)에 의하면 7. '원료물질'이라 함은 마약류가 아닌

II. 종류와 약리작용⁹⁾

마약류는 약리작용에 따라 흥분제(각성제)와 억제제(진정제)로, 의존성 면에서 중독성 약물과 습관성 약물로, 마약원료인 생약으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그리고 제조원에 따라 마약¹⁰⁾, 향정신성의약품¹¹⁾, 대마¹²⁾로 분류된다. 다음은 제조원에 따라 분류한 마약류의 종류와 약리작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마약

1) 양귀비

양귀비는 일명 앵속(opium poppy)으로 불리우는 식물로 황금의 삼각지대(미얀마·라오스·태국 접경지역) 및 황금의 초생달지대(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이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거의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재배되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부분 농어촌 및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가정상비약이나 동물치료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밀경작 하거나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다.

물질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군수용마약류’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해·공군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를 말한다.

9) 대검찰청(2004), 『마약류범죄백서』 참조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2) 아편(opium)

아편은 양귀비과의 2년생초인 양귀비의 열매에서 추출한 즙액을 굳힌 것 또는 이것을 가공한 것으로 덜 익은 양귀비 열매에 상처를 내어 유출되는 유액(乳液)을 채집하여 건조시켜서 덩어리로 만든 생아편과 이것을 가루로 하여 모르핀의 함유량을 10%로 조절한 의약품 아편인 아편말 그리고 흡연용 아편으로 나뉜다. 아편은 약 20종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으며, 주요 알칼로이드로는 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파파베린, 노스카핀(나르코틴) 등이 있다. 아편은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진정·진통·진경(鎮痙)·진해(鎮咳)·지사(止瀉)·최면제 및 마취보조제로 쓰이고 있으나, 만성중독¹³⁾시 식욕과 성욕을 상실하고 오심·구토·두통·현기증·변비·피부병·배뇨장애·호흡억제·혼수 등의 부작용을 유발시킨다.

3) 모르핀(morphine)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Morpheus(꿈의 여신)의 이름으로 명명된 모르핀은 아편으로부터 불순물을 제거하고 일정한 화학반응을 거쳐 추출한 강력한 진통성을 지닌 알칼로이드(alkaloid)로서 뛰어난 진통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기 암환자의 아픔을 덜어주기도 하고, 외과수술이나 화상으로 인한 고통을 진통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의약품으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다. 중독시 구토·발한·발열·설사 등의 부작용과 함께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을 유발하여 사용 중단시 심한 금단증상을 일으킨다.

13) 약물중독(Drug addiction)이라 함은 약물의 반복적 사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개인과 사회에 유해한 병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적 의존성, 내성, 그리고 재발의 위험성등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

4) 헤로인(heroin)

아세틸화합물인 헤로인은 '용감한·강력한'의 의미의 독일어 'Heroisch'에서 유래되었으며 긴장·분노·공포를 억제하여 행복감과 도취감을 주는 중추신경 억제제의 일종이다. 헤로인의 주생산지는 황금의 삼각지대(golden triangle)로 불리는 미얀마·라오스·태국 3국의 접경 산악지역으로 모르핀을 원료로 하기 때문에 약리작용은 모르핀과 유사하나 그 중독성은 모르핀의 10배에 달하여 소량을 연용할 경우에 쉽게 의존성이 생겨 만성중독에 빠지고, 점차 증량하지 않으면 견딜수 없는 강한 내성(耐性)을 가지며, 사용을 중지하면 금단현상을 일으킨다. 중독시 불안·불면·고민·침울 또는 발양(發揚) 등의 정신증세와 함께 구토·발한·발열·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식욕부진·맥박급박·정신지둔(精神遲鈍)이 되어 심신이 함께 쇠약해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이 때문에 미국은 1924년 헤로인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5) 코데인 (codeine)

모르핀이나 헤로인의 중독성을 치료하는 대체마약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코데인은 의학적으로 모르핀에 비하여 진통작용은 1/6정도에 불과하지만 수면을 촉진하고 기침을 완화시키는 진해 및 진정제로 기관지염·인두염·후두염·기침·백일해·폐결핵·신경통·산통(疝痛) 등에 사용한다. 마취성이 적으며 쾌감을 수반하지 않고 습관성이 되는 일이 적어 비교적 신체적 의존성이 적으나 남용할 경우에 정신적·신체적 의존성과 금단증상을 유발하게 된다.

6) 코카인(cocaine)

중추신경 흥분 작용이 있는 대표적인 마약이 바로 천연마약인 코카인이다. 코카인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서 흥분효과는 향정신성 약물에 속하는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필로폰)과 유사하며 사용할 경우 혈관수축, 혈압상승, 심장박동항진 등이 나타난다. 이외에 간세포 파괴작용이 있다. 코카인을 과량 사용하면 동공확장, 고열 등이 나타나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며 시간감과 거리감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코카인은 독성이 강하여 발작, 혼수상태를 유발하기도 하고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남용할 경우 정신적 의존성이 매우 심하여 끊을 의지가 있어도 사용을 중단하기 어렵다.¹⁴⁾

코카인은 코카나무의 코카잎에서 추출한 알칼로이드로서 위에서 설명한 약리작용 때문에 현재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으로 미국의 최대 남용마약류이기도하다. 보통 코카인은 빨대 같은 것을 이용해 코를 통해서 들이마시면서 비점막을 통해서 흡수시키는데, 이 때문에 상용자에게서 좌우 콧구멍 사이에 구멍이 뚫리는 비중격 천공의 증상을 많이 볼 수 있다. 코카인을 흡입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졸음이 없어지고, 감수성과 운동성이 향상되며, 쾌감이 극대화 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 중독시 영양장애와 함께 우울증·불안감·수면 장애·만성피로·정신혼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정신적으로는 집중곤란이나 도덕감정의 황폐 등 외에 특유한 코카인 환각증을 볼 수 있다. 즉, 벌레나 작은 동물이 몸 위에 기어다니는 것처럼 느끼는 체감환각이 일어나 온몸을 쥐어뜯어 상처투성이가 되기도 한다. 급성 중독시에는 현기증·안면창백·동공산란 등으로 시작되어, 명정상태에 빠지고 정신착란·환각·환청·실신 등을 볼 수 있으며, 호흡곤란이나 허탈을

14)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02), 『한국의 마약퇴치 정책연구』, 서울 : 다물기획, p.11.

일으켜 사망한다.

2.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오남용시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대통령령에 규제대상으로 지정된 물질을 가리키며 그 약리작용에 따라 환각제 및 중추신경계 흥분제(각성제), 억제제(진정제)로 나눌수 있다.

1) 메스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암페타민류는 대표적인 각성제 약물로서 그 종류로는 암페타민(amphetamine), 메스암페타민(methamphetamine), 텐암페타민(tenamphetamine)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흥분제(각성제)로서 속칭 ‘히로뽕¹⁵⁾’으로 불리운다. 이들은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강한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시키며 남용할 경우 뇌혈관 파열, 심부전, 고열 등의 원인으로 사망할 수 있으며 만성적인 남용자는 편집성 정신분열증과 유사한 정신병이 나타날수도 있다.

15) ‘히로뽕’의 어원은 1941년 일본국내 제약회사중의 하나인 大日本製藥株式會社가 메스암페타민을 ‘philopon’(히로뽕)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면서, 이 상품명에 그대로 우리나라에 전해져 메스암페타민을 가르키는 용어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에서는 메스암페타민류를 ‘覺性劑(각성제)’로 통칭하고 있다. 히로뽕을 시판한 大日本製藥株式會社는 히로뽕을 투약할 경우 졸음이 가시고 피로감이 없어지는 효과에 착안하여 회랍어의 ‘philoponos’ 즉 ‘일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단어에서 ‘philopon’이라는 상품명에 따왔다고 한다. 이 상품명은 일본어로 ‘히로’(疲勞)를 한방에 ‘뽕’(의성어)하고 날린다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다.

출처 : 대검찰청(2004), 『마약류범죄백서』, p.17.

특히 메스암페타민은 의존성¹⁶⁾이 강하여 중단할 경우 매우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며 금단증상으로 인한 두통, 호흡곤란, 근육경련 등이 수반되기도 한다. 메스암페타민은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각성제로 냄새가 없는 무색 결정 또는 백색 결정성 분말로 1888년 일본 도쿄대학 의학부 교수 나가이나라요시(長井長義) 교수가 천식약재인 마황(麻黃)으로부터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연구과정에서 처음 발견하였고, 1893년 처음으로 합성하는데 성공하였다.

2) 엑스터시 (Ecstasy, XTC, MDMA, '도리도리', 搖頭丸)

화학적으로 MDMA(Methylenedioxy Methamphetamine)로 통칭되는 암페타민계 유기화학물질로 1949년 독일에서 식욕 감퇴제로 개발되었으나 1980년대 마약으로 둔갑하여 1999년 이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마약이다.

16) 의존(Dependence)은 마약류 및 약물을 지속적, 주기적으로 사용한 결과 정신적·신체적 변화를 일으켜 사용자가 마약류 및 약물 사용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어렵게 된 상태를 말한다. 다음에 제시된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기준의 7가지 증상 중 3개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지속되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장애나 고통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존이라고 한다.

- ① 내성이 생기거나
- ② 금단증상이 나타나거나
- ③ 생각했던 양과 기간보다 더 많은 양을 더 오랫동안 사용
- ④ 사용중단이나 사용량 감소 노력이 실패
- ⑤ 약물사용에 많은 시간을 소비
- ⑥ 약물사용으로 인해 대인관계, 직업 및 취미생활 등을 저해
- ⑦ 약물사용으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질병의 발생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에 비해 중독(Addiction)은 의존보다 더 심한 약물사용 단계로서 약물사용에 대한 강박적 집착을 나타내고 일단 사용하기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야 마는 조절 불능상태를 말한다. 해로운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말하며 아주 심한 심리적·육체적 의존상태라 볼 수 있다.(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8)

유럽, 미국 등지에서 주로 발견되며, 국내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 형태는 보통 정제형이고 그 모양은 가지각색이다. 약리작용으로는 식욕상실, 혼수, 정신착란 등을 일으키며, 과다사용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또한, 엑스터시는 복용하면 신체접촉 욕구가 강하게 발생하여 ‘기분이 좋아지는 약(Feel Good Drug)’ ‘포옹마약(Hug Drug)’ ‘클럽마약(Club Drug)’ 등으로 지칭된다.

3) 야바 (Yaba)

세계 최대 마약밀매조직인 ‘쿤사’가 개발한 야바는 태국에서는 ‘말처럼 힘이 솟고 발기에 좋은 약’이라고 해서 ‘Horse Medicine’으로 통용되고 있다. 필로폰과 헤로인, 코카인, 코데인, 카페인 등의 혼합 마약으로 한번 복용하면 3일간 잠을 자지 않을 정도로 환각효과가 강하며 중독성도 강하다. 기존 히로뽕과 달리 노란색이나 붉은 색을 띠고 있는데다 정제나 캡슐형태로 태국, 일본, 호주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 또 주사기로 투약하는 번거로움이 없는데다 가격이 저렴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도부터 남용사례가 단속되고 있다.

4) 엘에스디 (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

1938년 스위스 화학자인 알버트 호프만 박사가 맥가균에서 우연히 합성한 물질로 무미, 무취, 무색으로 강한 흥분적 성분을 가진 백색분말의 중추신경 흥분제이다. 종이 또는 정제에 LSD용액을 흡착시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하여 신세대 사이에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다. 주로 강하고 기묘한 정신적 이상을 일으키고 시각, 촉각, 청각 등 감각을 왜곡시키

는 가장 강력한 물질로 알려져 있는 LSD는 극소량인 25mg(먼지 1입자 크기)만 투약해도 4~12시간 동안 환각증상을 보이며 염색체 이상까지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물이다.

5) GHB (Gamma-HydroxyButrate)

무색무취의 GHB는 소다수 등 음료에 몇 방울 타서 복용하여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으로 일명 '물뽕'으로 불리우기도 하며 마시게 되면 10-15분 내에 약물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3-4시간 지속된다. 약물효과로는 기분이 좋아지고 다소 취한 듯 하면서도 몸이 쳐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단순음료가 아닌 알콜류에 타서 마시면 그 효과가 견잡을 수 없이 급속히 나타나 의식을 잃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발생한 일을 기억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약리작용을 이용하여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 용으로도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Date-rape Drug)'로 불리기도 한다. GHB는 짠맛이 나는 액체로 근육강화 호르몬 분비효과로 인하여 FDA가 공식적으로 이 제품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시판을 금지하기 전까지만 해도 건강식품 취급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었다.

6) 기타

중국산 '살 빼는 약'으로 펜플루라민(Fenflutamine), 암페프라몬(Amfepramone) 등 각성제가 함유된 '분기납명편(펜플루라민)' '안비납동편(암페프라몬)' '감비필타(일명:패씨감비편)' '택림(펜플루라민+암페타민)' '섬수' '상청춘' '상주청' '복방감초편' '분미림편' '건미소감미요한' 등이 있다.

3. 대마(大麻)

대마는 칸나비스속 일년생 식물로서 중국, 인도, 북부아프리카, 중남미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세기 전부터 섬유 및 천식, 두통 등의 치료약물로 재배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로부터 섬유용으로 널리 재배되어 왔으나 의학용으로 사용한 기록은 없다.

대마 줄기의 섬유는 삼베나 그물을 짜는 원료로 쓰이고, 열매는 향신료의 원료나 한방약재로, 종자는 조미료용이나 채유용으로 그리고 잎과 꽃은 흡연용 즉 대마초로 사용이 되어왔다.¹⁷⁾

1) 대마초 (marihuana)

삼의 잎과 꽃에는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THC)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취 물질이 들어 있어 담배로 만들어 흡연하면 중독 증세를 보인다. 이것을 대마초라고 한다. 대마초는 담배보다 훨씬 많은 자극제와 타르를 함유하고 있으며 연기 속에 수많은 유독물질이 들어있어 폐 속에 산소 흐름을 원활하지 못하게 한다. 그 결과 대마초 흡연은 폐의 감염이나 만성기관지염, 축농증 등을 유발하며 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양의 대마초를 흡연하면 공중에 뜨는 기분, 빠른 감정의 변화, 환상, 환청 효과가 나타나고 극도로 많은 양을 흡연할 경우에는 중독성 정신이상 상태로 접어들기도 한다.¹⁸⁾

이로 인한 사고력의 저하·비현실감·망상·흥분·주의력 저하를 일으키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감각을 변화시키며 시각과 운동신경에 장애를 일으

17) 대검찰청(2003), 『마약류범죄백서』, p.23

18)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02), 『한국의 마약퇴치 정책연구』, 서울 : 다물기획, p.13.

킨다. 인도산의 인도대마초(*C. sativa* var. *indica*)는 삼과 같은 종이지만 THC가 더욱 많이 들어 있다.¹⁹⁾

2) 대마수지 (hashish)²⁰⁾

대마초 암그루의 꽃이삭과 상부의 잎에서 분리한 호박색 수지(樹脂)를 가루로 만든 것을 해쉬시(hashish)라고 하며, 기름(oil)형태의 것도 있다. 대마수지는 일반 대마초보다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THC)성분이 3~4배 정도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대마의 지속적인 남용은 정신운동 및 내분비 기능의 장애, 면역 능력 감소에 따른 저항력 저하가 일어날 수 있고 정신적 의존성이 생기며, 정신분열증과 같은 중독성 정신병을 일으키기도 한다.²¹⁾

第 2 節 마약류 투약의 폐해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독자들은 마약을 손에 대지 않으면 몸이 무겁고 짜증이 늘어나며 의심과 경계심, 적개심과 공격성이 증가하며, 더 나아가 수치심과 도덕성 상실을 초래하고 피해망상과 환청, 환시 등 정신병적 증상이 잦아지고 종국적으로는 자살충동에 사로잡히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마약투약은 불결한 주사바늘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피부염과 폐농양, 뇌혈관염, 간염, 에이즈 등 각종 합병증을 일으킨다.

19) <http://www.spo.go.kr/>(대검찰청 마약과)

20) 대마수지는 가마솥에 대마잎을 끓여 농축한 제품으로 왕겨비누와 비슷하며, 해쉬시(Hashish)는 대마수지를 가루로 만든 것이고, 해쉬시 오일(Hashish Oil)은 대마를 고도로 농축시켜 기름형태로 만든 것을 일컫는다.

대마 90~150kg을 농축하여 해쉬시 오일(Hashish Oil) 1kg 정도를 만든다고 한다.

21) <http://www.spo.go.kr/>(대검찰청 마약과)

I. 신체적 폐해

마약류를 지속적으로 투약하게 됨으로서 체중이 감소하고 잦은 경련과 영양실조에 걸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고 초점이 없으며 눈곱이 끼어 있거나 줄음이 오는 듯한 모습을 한다. 또한 흡입시 코에 콧물이 흘러기도 한다.

II. 정신적 폐해

가장 심각한 폐해라고 할 수 있다. 환각과 환촉(투약자의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 및 피해망상으로 인한 초조·불안감, 과도한 흥분과 알콜에 취한 듯한 행동으로 인한 공격적 행위를 하여 타인은 물론이고 투약자 자신에게도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폐해들로 인한 사고력의 혼란과 건망증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바로 투약자의 인격파괴 라고 할 수 있겠다.

III. 합병증

면역기능의 저하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거나 염증발생시 저항력을 잃게 되어 크게 번지게 된다. 또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주사기를 사용하여 투약하는 경우에는 B형 간염이나 AIDS 등 여러 가지의 합병증에 걸리기도 쉽다. 다음은 투여방법에 따른 합병증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흡입시

코를 사용하여 흡입하는 경우에는 축농증이나 만성 기관지염 또는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폐렴, 폐결핵 등의 폐기능 장애와 코뼈가 뚫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2. 주사 사용시

여러사람이 하나의 주사기를 돌아가면서 사용함으로써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기 쉬우며, 특히 AIDS에 걸리게 되거나 정맥염, 심장내막염, 혈전증, 피부염에 걸리기 쉽다.

3. 복용시

위염이나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위점막의 손상으로 인하여 소화기 계통에 장애가 발생하며, 간경화, 당뇨병, 고혈압, 중풍, 암, 성불구, 수태능력장애, 기형아 출산 확률이 높아진다.

4. 기타

상습 투약시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 등 기타 정신병등 정신과적 합병증이 발생하여 자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第 3 章 마약류 범죄의 개관

第 1 節 마약류 범죄의 개념

국어사전은 범죄를 ‘① 죄를 지음, 또는 지은 죄. ② 법률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할 위법행위’라고 뜻풀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란 사회에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구조의 변화, 시민의식과 윤리관의 변화, 그에 따른 현대형 범죄의 발생 등으로 그 개념 자체가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대마의 사용이나 재배, 소량 소지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 국가의 경우처럼 법률에 정한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가 많다. 또한 행위자의 자격이나 직업에 따라 동일한 행위가 다르게 정의되기도 하는데 예컨대 마약류가 수반된 의사의 치료행위와 개인적 쾌락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범죄의 개념과 그에 따른 정의는 다양하게 논의, 정리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마약범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유엔협약과 일본, 우리나라에서의 정의와 사용례를 살펴보았다.

1.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유엔 협약²²⁾(UN

22)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유엔 협약(UN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은 1980년대 들어서 대규모 범죄조직에 의한 마약류 밀거래가 국가의 경제,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자, 각국에서 적법하게 사용되는 의료용, 연구용 마약류의 유통과정뿐만 아니라 불법적이 국제이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아세톤, 과망간산칼륨, 무수초산, 에페드린 등 마약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료물질 23종을 통제물질로 규정하고 있다.(1988. 12. 19. 제 6차 총회에서 채택됨)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Psychotropic Substances)에서의 정의와 사용례

당사국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당사국들이 국제적 규모의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에 대한 불법거래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 체제의 기본적인 규정과 일치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서 당사국간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본 협약에서의 마약관련 범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본 협약 제3조(범죄 및 처벌) 제1항에 의하면, (1)1961년 협약, 1961년 개정협약, 혹은 1971년 협약의 규정에 위반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생산, 제조, 추출(*extraction*), 조제(*preparation*), 제공(*offering*), 판매 목적으로 제공, 유통(*distribution*), 판매(*sale*), 어떤 형태든지의 배달(*delivery*), 중개, 송달(*dispatch*), 중계송달(*dispatch in transit*), 우송(*transport*), 수입 또는 수출 (2) 1961년 협약과 1961년 개정협약의 규정에 위반해 마약을 생산할 목적으로 양숙, 코카나무, 대마 재배 (3)위(1)에 열거한 행위를 목적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 물질을 소유 또는 구입 (4)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을 불법으로 재배, 생산 또는 제조하거나 이를 위해 사용됨을 알면서도 장비, 재료 혹은 표 I, II 의 물질을 제조, 수송 또는 유통 (5)위(1)(2)(3)(4)에 열거한 범죄행위를 조직, 관리 및 자금조달과 또, 이러한 범죄로부터 발생하거나 범죄에 가담 혹은 범죄행위로부터 발생한 재산임을 알면서도 그 재산의 본래 성격(*true nature*), 출처(*source*), 소재(*location*), 증여(*disposition*), 이동(*movement*), 권리 혹은 소유권을 은닉 및 위장하거나 범죄행위자의 법적 처벌을 회피하고자 재산의 불법출처를 숨기거나 위장할 목적으로 또는 이런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지지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전환(*conversion*)하거나 양도(*transfer*)하는 행위와 취득시 위 (1)(2)(3)(4)(5)에 열거된 범죄로부터 혹은 이런 범죄행위에 가담한 행위로부터 발생한 재산임을 알면서도 그 재산을 획득,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재배, 생산 또는 제조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되어지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장비, 재료, 원료물질(통제물질)을 소유하거나 본조에 따라 성립된 범죄행위를 범하게 하거나 불법적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을 사용하도록 공공연하게 선동하거나 권유, 범죄에 가담, 연합, 공모, 기도, 방조(*aiding*), 교사(*abeting*), 조장(*facilitating*) 및 조언(*counseling*)하는 행위, 본조 2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1961년 협약 및 1961년 개정협약의 규정에 반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소유하거나 구매 또는 재배하는 경우를 마약류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본 협약은 각 당사국이 국내법에 형사범죄로 성립될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2. 일본의 정의와 사용례

일본 마약특례법 2조 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제약물’이라는 것은 마약 및 향정신약취체법에서 규정하는 ジアセチルモルヒナ, 코카인 등의 131종류의 마약 및 페노바르비탈 등의 73종류의 향정신약, 대마취체법에서 규정하는 대마(대마초 및 그 제품), 아편법에서 규정하는 아편(罂粟의 液汁가 凝固된 것 및 이것을 가공한 것) 및 앵속 (앵속의 종자를 제거한 마약을 추출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각성제단속법에서 규정한 페닐메칠아미노프로판 등 2종류의 각성제를 말한다.²³⁾ 일본의 약물범죄취체(단속)법령은 각시대에 있어

23) 本田守弘, [麻薬新法における犯罪規定], ジュリスト(1991.12. 15) No.992, 77 頁.

약물범죄의 동향 등에 대응하는 약물범죄대책의 일환으로서 제정·개폐되었다. 그 결과 현행 약물범죄단속법령은 마약 및 향정신약취체법, 아편법, 대마취체법, 각성제취체법(이상 4개를 합하여 '마약4법'이라고 한다.), 형법 제2편 제14장 '아편흡입에 관한 죄', 독물 및 극물취체법, 및 '국제적인 협력 하에 규제약물에 관계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등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마약 및 향정신약취체법등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마약특례법)의 7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²⁴⁾

일본에서 약물범죄라 함은 마약사범(마약 및 향정신약취체법, 아편법 및 대마취체법의 각 위반)과 각성제 사범(각성제취체법위반) 그것에 마약 등의 약물에는 속하지 않지만 신나 및 접착제 등의 有機溶劑亂用사범(독극물 및 극물취체법 위반)을 포함하여 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²⁵⁾

3. 우리나라의 정의와 사용례

우리 나라에서는 형법을 포함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여러 법제에 위반행위 및 그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범죄의 정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 정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법률 제2조 2항을 살펴보면 마약류범죄라 함은 동법 제6조·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내지 제61조의 죄를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업으로서 행한 마약류의 불법수입등의 행위 및 이에는 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하며, 마약류로서의 물품의 수입 또는 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

24) 法務總合研究所編, 犯罪白書 平成7年版(1996) 第4編.

25) 藤本哲也, [刑事政策概論], 青林書院 1994. 345 頁

할 약물 기타 물품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나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에 한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 기타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소지하는 행위 및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수출입·제조·매매나 매매의 알선을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하고 있다.

또한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제조·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규정에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²⁶⁾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으며, 규정(제3조제8호)에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 또는 수출한 자나 수입 또는 수출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교부(미수범 처벌)하거나 영리의 목적 또는 상습으로 이러한 행위(미수범 처벌)를 한 자에 대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형을 택하고 있으며,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

26) 제2조제4호 가목

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행위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
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²⁷⁾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
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유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섭취할
목적 또는 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와 규정에 위반하여 마약
을 소지·소유·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한의
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수출입·매매 또는 제조의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소지·소
유하는 행위,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종자·종묘를 관리·수수 또
는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디아세틸모르핀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
하는 것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행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
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한 자 또는 매매, 매매의 알선, 수
수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²⁸⁾,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한 자 또는 매매·매매의 알선·
수수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
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대마와 관련하여서는 규정에 위
반하여 마약류(대마를 제외한다)를 취급하거나 대마의 수출·매매 또는 제
조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행위,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27)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하며, 미
수범 역시 처벌한다.(시행일 2000.7.1)

28) 시행일 2003.06.27.

알선을 한 자 또는 대마의 제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교부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²⁹⁾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교부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행위, 규정에 위반하여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대마·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대마초종자 또는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소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대마초종자·대마초종자의 껍질을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행위³⁰⁾를 규제하고 있다.

위 내용을 요약하여 보면 마약류 및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의 불법적인 수출입, 매매, 사용(투약), 소지, 기타 관계법령위반 행위를 규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사상 마약류 범죄라 함은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불법약물을 장기간 사용하여 의존성, 금단증상을 체험하는 마약류사범과 이러한 불법약물을 생산, 매매하여 유통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약물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이 있다. 또한 마약류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본드(접착제)와 부탄가스등 유해화학물질이 있으며 이것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29)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0) 상습으로 본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하는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하며,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시행일 2000·7·1)

4. 본 논문의 정의와 사용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마약류범죄의 개념은 마약류와 그 원료의 밀조, 밀제 및 밀수행위와 마약류의 소지 및 불법사용 행위, 관계법령위반 행위(마약류 취급자의 관계법령위반행위 등)라는 일정한 틀 안에서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마약류 범죄의 유형중에 마약류의 불법사용 행위에 대하여 처벌대상이 아니라 치료대상으로서의 질환이라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으나 심한 중독성과 이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폐해와 사회의 건전한 기풍 저해는 물론이고 국민의 건강을 심히 침해하여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등 그 해악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마약류범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며 본 논문에서도 위와 같은 개념에서 다루고자 한다.

第 2 節 마약류 범죄의 특성과 유형

1. 마약류 범죄의 특성

마약은 일차적으로 범죄의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 마약류범죄는 소위 피해자 없는 범죄다. 왜냐하면 거래의 쌍방 모두가 만족을 받기 때문에 마약판매상이 꼭 가해자라고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 인지되기도 어려워 규모도 파악하기 힘든 암수범죄인 경우가 된다. 마약류범죄의 특징은 이를 행하는 개인은 물론 중국적으로는 그 주변의 가정과 전체사회를 파멸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마약의 사용 그 자체도 사용자의 주변인 내지 사회까지도 파멸시킬 수 있는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마

약류 남용은 그 습관성 때문에 또다시 마약을 얻기 위하거나 마약의 환각작용으로 인하여 제2의 범죄를 범하게 되는 범죄창출 작용의 폐해도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마약의 생산, 유통 등에 관련된 수반범죄(隨伴犯罪)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한다. 또한 마약을 흡식한 이후에 그 상태가 바로 후속범죄(後續犯罪)의 좋은 여건을 제공한다고 한다.³¹⁾ 또한 마약류 투약자들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형법 등 통상적인 범죄행위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확실하나 마약류 투약범죄에 있어서는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이들은 처벌의 대상이면서도 보호되어야 대상이라는 점이다.

II. 마약류범죄의 유형

마약류 사범은 치밀하고 교묘한 범행수법이 일반적이고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자구책을 강화함으로써 그 범죄수법이 더욱 발전되고 있다.

1. 단순투약·사용 사범

마약류를 그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로 주사, 음용, 흡입, 흡연, 피부에 바르는 경우가 대표적인 방법이다.

2. 소지

관리는 마약류를 자기의 지배하에 두고 본래의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마약류의 취득에서부터 사용, 교부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무를 책임

31) 손동권 "마약류남용에 관한 범죄론적 소고"에서 재인용

지고 행하는 반면에 소지란 마약류를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3. 장소를 제공하거나 흡식장비, 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4. 국내 밀매사범

주로 다방이나 식당 카운터 또는 공원, 많은 인파가 붐비는 고속도로 휴게소, 공중전화 부스 등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매매는 정보원을 이용한 직거래방법과 온라인을 이용하여 계좌 이체후 물건을 받는 경우 및 노숙자를 이용하여 쇼핑백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택시기사를 통한 택송, 오토바이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한 택송의 방법도 사용한다.

이들은 CD케이스, 서류봉투, 화장품케이스, DVD케이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물품으로 위장을 하여 거래를 하기도 하며, 최근 인터넷을 이용하여 최음제 또는 정력제, 흥분제, 살 빼는 다이어트 약으로 선전 판매하기도 한다.

5. 밀반입사범

국제우편물이나 국제 항공화물, 화물컨테이너 속에 여러 종류의 화물과 함께 탁송하여 밀반입한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여행자 소지품 및 신체의 은밀한 부분에 은닉하여 밀반입을 시도하는데 이때 마약류 전과가 없는 평범한 부녀자나 유흥업소 종사자 또는 유학생, 조선족,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동남아인을 지게꾼(운반책)으로 이용한다. 때로는 수출입상으로 위장하여 물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반입하기도 한다.

6. 제조사범

공단 밀집 지역이나 컨테이너 차량 속에서 이상한 냄새를 풍기며 제조하거나 아연공장, 쓰레기 폐기물 처리공장 등으로 위장하여 제조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해안 또는 산간, 도서벽지, 독립가옥, 폐농가, 폐축사를 이용하여 제조한다.

- ① 조제 - 마약류 이외의 원료로부터 마약류를 만들어 내는 것
- ② 제제 - 약물을 마약류에 화학적 변화를 가하지 않고 다른 마약류를 만드는 것
- ③ 소분 - 약물을 분할하여 용기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기에 적당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第 4 章 한국의 마약류 범죄의 동향 및 규제정책에 대한 기초적 고찰

第 1 節 한국사회의 마약류범죄의 변천과정

국내의 마약류 사범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보면, 1950년~1960년대는 아편과 메산돈이 남용되었고, 1960년~1970년대는 필로폰이 밀조되어 일본으로 밀수출되었으며, 월남전에서 대마초가 유입되어 흡연되기 시작하여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젊은층에서 널리 상용되었다. 1980년~1990년대는 메스암페타민 속칭 ‘히로뽕’ 투약자가 부산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정부에서 강력한 단속을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부 필로폰 제조책이 중국으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2000년을 전후한 세계화의 바람은 외국인의 왕래와 해외유학생이 늘어나면서 이들로부터 신종마약류가 국내로 유입되어 확산되는 등 우리나라가 새로운 마약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I. 마약

우리나라에서 마약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광해군 3년(1611년)아편의 약효 및 제법이 소개된 것이 최초라고 전해진다.³²⁾ 특이할만한 사실은 조선시대에는 마약을 국법으로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외 특별한 기록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 마약이 남용되기 시작한 것은 시대적으

32) 강신숙(1999), “마약류 밀수단속을 위한 관세청의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9.

로 보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후 앵숙 재배를 권장하면서부터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1912년부터 1914년까지 조선총독부가 아편을 단속하는 법령을 발표하였고, 1925년 총독부가 국내소요량의 30배가 넘는 아편을 전매작물로 허용하여 중독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몰핀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선전과 함께 당시 유행하였던 콜레라와 함께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중독자가 발생하였다.³³⁾

당시 조선총독부가 한국에서의 마약 단속을 원초적으로 묵인한 결과 1920년부터 1945년까지 연간 2만 여명에 달하는 중독자가 발생하였으며, 해방이후 사회 통제기구의 미비와 한국전쟁기간을 지나면서 약 7만명선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쟁기간 중에 부상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진통제인 몰핀이 남용되었고 같은 시기 코데인 등 기침약으로 가장한 아편 주사약이 일반인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매매되어 남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약류 중독 사범은 5·16군사 쿠데타 이후 정부의 강력한 단속 정책에 그 세가 약화되었으나 일본에 대한 마약류 수출은 증가하였다.³⁴⁾ 1997년 정부의 북방 개방 정책에 의하여 조선족들의 왕래가 늘어나면서 마약 원료인 생아편이 유입이 증가하였다.

최근들어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정책으로 중국으로 이동하였던 밀조기 술자들이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필로폰 원료 구입의 용이성을 이용 대량 생산하여 한국을 중간 거점으로 일본으로 수출하는 '백색의 삼각지대³⁵⁾'가 형성되어 헤로인 밀조 밀수출 지대로 유명한 동남아의 '황금의 삼각지대'인 미얀마·라오스·태국과 코카인과 헤로인 밀조 밀수출 지대로 유명한 서남아

33) 상계논문, p.29.

34) 당시 일반국민들의 반일 감정으로 인하여 이 시기 부산의 마약밀조조직이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일본에 수출하였으나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였다.

35) 흰색의 필로폰과 중국·일본·한국을 잇는 삼각지에서 기인한 말로 'White-Triangle' 이라고 불리운다.

시아 지역인 '황금의 초생달 지대'에 이어 새로이 부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의화별이 목적으로 아편 등 마약을 러시아, 중국, 대만, 한국, 일본에 수출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본에서 유통되는 필로폰의 3분의 1이 북한에서 생산된 것이다.³⁶⁾ 이러한 주변 국가들의 동향으로 미루어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의 확산이 증가할 우려가 농후하다.

II. 대마

우리나라에서의 대마초는 1965년 월남전 당시 국내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이 흡연을 시작하였으며 1967년경부터는 이들을 상대로 매춘행위를 하였던 기지촌의 접대부들 사이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여 1967년을 전후하여 여러 계층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시기 대학생들을 포함한 20대 전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마초 사용이 성행하였는데 이는 당시 유신정권에 대항하는 자포자기 수단으로 또는 기성세대에 반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III. 향정신성 의약품

향정신성 의약품 중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스암페타민

36) 2000년대 들어 터진 북한 관련 국제 마약사건만 해도 큰 것이 5개나 확인돼 있다. 2000년 2월 일본 시마네에서 북한산 필로폰 250kg을 적발한 것을 비롯해 ▲2002년 1월 북한에서 일본으로 해상운송 중이던 필로폰 151kg을 압수한 사건 ▲2002년 7월 북한 함정이 대만 어선에 헤로인 198봉지를 전달한 것을 대만 경찰이 적발한 사건 ▲지난 4월 호주 경찰이 북한 선적 봉수호를 검색하면서 헤로인 125kg(50kg은 배에서 발견했고 75kg은 육지에서 찾아냈다)을 적발한 사건 ▲6월4일 부산항 필로폰 적발 사건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면면들이다. 적발된 사건마다 모두 필로폰이나 헤로인이 100kg이 넘는 초대형인 것이 특징이다. :월간조선(2003년 7월호)

(Methamphetamine) 속칭 ‘히로(일본어:ひろウ:피로) 뽕(한방에 날린다는 의성어)’이다. 이는 ‘Philopon’의 일본식 발음으로 각성제인 메스암페타민의 시판당시 상품명이며 어원의 의미는 희랍어의 ‘Philoponos’로 ‘일하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뜻으로 잠을 쫓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품명으로 붙여졌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군부는 피로를 방지하는 약으로 군수공장의 철야 작업원들과 전쟁중인 군인 등에게 이 약을 대량으로 제조하여 ‘승리정’ ‘돌격정’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공급하여 피로회복과 전투의욕, 작업능력 및 생산능력 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국내에서는 1970년대 부산지역을 거점으로 마약밀조 조직이 형성되었으며, 형성 초기에는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일본에 밀수출하였으나 일본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일부가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1983년경 부산, 대구,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중독자가 발생하였으며 1987년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第 2 節 우리나라의 마약류 규제법규

I. 규제법규 현황

1. 해방 이전(일제하 시대³⁷⁾)

우리나라는 중국과 오가는 상인들에 의하여 평안도와 함경도의 국경지방을 중심으로 양귀비의 재배와 아편의 흡연이 시작되었다. 당시 일반인들 사이에서 아편은 유행처럼 급속도로 확산되었으며 심지어 외국인 선교사들이 아편을 의료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아편중독자는 증가하게 되었다. 한일합방

37) 마약의 관리 및 통제업무를 ‘재무부 전매국 마약통제과’에서 담당하였다.

후 조선총독부는 1919년 6월 ‘조선아편채취령’등 마약규제법규를 제정하였고 아편의 제조와 소비를 규제하는 제1차 국제협약이 1925년 2월 11일 제네바에서 체결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1930년 3월 ‘아편단속법’ 및 ‘아편중독자등록법’을 제정·공포하였다. 그러나 1925년 조선총독부가 국내소요량의 30배가 넘는 아편을 전매작물로 허용하는 등 이중적인 정책을 펴므로써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몰핀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일반인의 인식과 당시 콜레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사회적 상황이 맞물려 많은 중독자가 발생하였다.

2. 1950년대

정부차원에서 마약류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 1946년 11월 미군정법령 제119호의 마약속규정에 의하여 보건후생부 약무국 수습과로 마약의 관리 및 통제업무가 이관되어 마약관계업무를 보건부가 관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1952년 7월 25일 대통령령 제662호에 의거 마약과가 신설되었으며 이때 마약감시원제도를 두게 되었다.

아편규제를 위한 일반법인 형법은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2호로 제정되었으며 제17장에서 ‘아편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규제법규가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기존의 마약에 관한 국제협약 즉 1925년에 체결된 ‘아편 및 기타 마약에 관한 제네바협약’, 1931년의 ‘마약의 제조제한 및 유통규제를 위한 제네바협약’, 1948년 파리의정서와 1953년 아편의정서등의 국제협약에 의거 1957년 4월 23일 마약법이 제정되어 미군정법령 제119호를 대체하기 위하여 마약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3. 1960년대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하게 된 박정희 정권은 1961년 7월 1일 '특정범죄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공포·제정하여 마약사범에 대하여 최고 사형까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형을 강화하였다. 이 법은 부정마약의 단속과 마약의 적정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으로 아편중독자를 규제하는데 기여하였다. 1963년경부터 합성마약인 메사돈이 주사제에 주입되어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불법 메사돈 주사제가 전람남도, 강원도 농어촌지역까지 널리 확산되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건사회부가 1963년 12월 26일 마약과내 감시계를 설치하고, 보건사회부 약정국에서 부정 메사돈 주사제의 특별단속에 나서 16개 제약회사의 허가가 취소되고 이 중 12명의 사장이 구속되었는데 이것이 소위 '메사돈 파동'이다. 메사돈 파동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마약법의 보완개정과 함께 소요예산을 대폭 늘려 마약감시원을 중심으로 하는 마약류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하였고, 정부 각 관계기관에 의하여 5대 사회악 제거운동(밀수, 탈세, 폭력, 도박, 마약)이 보다 강력히 전개되었다.

4.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정부에서 마약공급원인 밀수루트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마약조직이 근절상태에 이르러 마약 가격의 폭등과 저질의 마약류 유통을 초래하게 되어 마약남용자 수는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남용자 중 일부가 시중약국에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수면제류 또는 일반 진통제류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비마약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요

구되었다. 이에 보건사회부에서는 1970년 8월 7일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밀수원의 지속적인 붕괴로 인하여 시장에서 유통되던 부정마약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일부 중독자에 의한 소규모 암거래가 형성되었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던 산간벽지의 농민들이 가정상비약을 이유로 깊은 살골짜기에 다른 농작물로 위장하여 아편을 밀경작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기지촌 주변 위안부 등 일부 마약중독자들이 구입이 편리한 점을 이용하여 한외마약을 다량 복용함으로써 마약복용의 효과를 얻으려는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마약법을 개정하여 한외마약의 판매량을 제한하고 구매자의 인적사항 기재를 의무화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1977년 6월 8일부터 시행하였다. 또한 마약을 제외한 습관성이 있는 의약품 및 대마의 관리를 위해 1970년에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인기 대중가수 등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층에서 대마초를 흡연하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대마를 습관성의약품의 범주에서 분리하여 특별히 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마관리법을 제정하였다. 1976년 4월 7일 법률 제2895호로 제정된 대마관리법은 대마의 재배를 엄격히 규제하고 그 취급을 적절히 하여 대마의 유출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습관성이 없는 일반 의약품으로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품에 대하여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그 규제를 위하여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폐지하고 1979년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새로이 대마사범이 급증하였고 또한 1980년대 우리사회의 소비향락적 분위기와 함께 메스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남용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0년 8월 7일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하여 대마초의 수출입, 매매, 흡연행위 등을 규제하였으나 대마

사범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 정부에서는 대마재배의 허가제와 대마폐기의 의무화, 대마의 수출입, 매매 수수 흡연 소지의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마관리법을 1976년 4월 7일 제정하였다. 따라서 1970년에 제정된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은 1976년에 대마관리법이 동법에서 분리되고 1970년에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이 동법을 대체하여 제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 한편 보건사회부에서는 1970년대 이후 마약감시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함으로써 그 단속기능을 강화하여 왔는데, 이들 마약감시원들은 각급 검찰청의 전담검사 지휘아래 각종 마약류 사범의 단속업무를 담당하였다. 1989년 2월 13일 대검 마약과의 발족과 함께 종전의 보건사회부 마약과는 마약관리과로 그 명칭이 변경됨과 동시에 마약과 소속의 마약감시원 77명은 검찰로 이관되었으며 현재 마약류 오·남용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계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 1990년대 이후

1995년 12월 6일에는 영리목적의 마약류범죄를 가중처벌하고, 마약류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환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밖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신나, 본드 등의 흡입행위를 규제하고, 약사법은 약사에 관한사항 중에서 마약류 관리를 위한 제반 의무를 부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법에 규정된 일부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다. 1996년 4월 6일 의료용 마약류 감시업무가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본부(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청)로 이관되었고, 1997년 12월 31일에는 마약류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위반시 벌칙을 대폭 강

화하였다. 한편 1998년 2월 28일 정부조직개편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독립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마약관리과가 이관되었고, 우리나라는 1998년
4월 12일 유엔의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협약' 즉
비엔나협약에 가입하였다.

II. 마약류 규제법규

1. 형법

우리 형법에서는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를 두고 있다. 형법상의 아편에
관한 죄의 규제대상은 아편, 물핀 또는 그 화합물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상
의 금지행위와 벌칙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형법상의 금지행위와 벌칙

범죄 유형 및 처벌 내용							
· 아편등의 제조 수 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 아편흡식기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 아편을 흡식하거나 물핀을 주사한 자, 위 의 목적을 위한 장소 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		· 아편, 물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 기구를 소지한 자		· 세관의 공무원이 아 편, 물핀이나 그 화합 물 또는 아편흡식기 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 입을 허용한 때	
일반범	상습범	일반범	상습범	일반범	상습범	일반범	상습범
10년이하 의 징역	형의 1/2가중	5년이하의 징역	형의 1/2가중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 하의 벌금	가중규정 없음	1년이상 유기징역	형의 1/2가중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³⁸⁾

본 법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유형과 그 벌칙에 대하여 이미 앞 3장 마약류 범죄의 개관에서 살펴보았다. 1970년 8월 마약을 제외한 습관성 의약품 및 대마를 관리하기 위하여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이 제정되었다가 1980년 4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으로 개편되었다. 정부는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대마의 체계적 관리와 대마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1976년 4월 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서 대마만을 분리하여 대마관리법을 제정·시행하였다. 이후 2000년에 이 3법을 통합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³⁹⁾ 이 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⁴⁰⁾

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⁴¹⁾

‘1999년 UN협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영리목적의 마약류 범죄를 가중처벌 하고, 마약류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 환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외국의 몰수·환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외국의 몰수·환수재판의 집행을 위한 국제공조절차 등을 마련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이다.⁴²⁾ 이 법은 국제적 협력하에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38) 제정 2000. 1. 12 법률 제6146호 보건복지부

39)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02), 『한국의 마약퇴치 정책연구』, 서울 : 다물기획, p.18.

40) 동법 제1조

41) 제정 1995. 12. 6 법률 제5,011호

42) 이삼(2000), “마약류범죄수익의 몰수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50.

등의 방지를 통하여 마약류범죄의 진압과 예방과 진압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률에 대한 특례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⁴³⁾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⁴⁴⁾ 특히 마약사범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동법 제11조 (마약사범의 가중처벌) 제1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중 마약과 관련된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조 제2항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제60조 중 마약과 관련되어 규정된 죄를 범한 자중 소지·재배·사용 등을 행한 마약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가액'이라 한다)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가액이 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각각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다.

43) 동법 제1조

44) 동법 제1조

第 5 章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실태 및 분석

第 1 節 마약류 범죄분석⁴⁵⁾

본 절에서는 2003년(1. 01 ~ 12. 31)에 전국 각급수사기관(검찰, 경찰, 특사)에서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작성·전산입력한 각 범죄통계원표(발생통계원표·검거통계원표·피의자통계원표)중 마약범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분석을 하였다. 이는 대검찰청에서 2004년 8월 발행한 범죄분석(Analytical on Crimes)자료(2003년도)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하면서 마약류 범죄발생 및 검거건수 와 남여비율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1. 마약류 범죄의 발생 및 검거상황

2003년도 마약류 범죄 발생 및 검거상황을 살펴보면 총 5,421건 발생에 5,578건 검거하여 발생보다 검거 건수가 157건이 증가하였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발생이나 검거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5) 대검찰청(2004) 『범죄분석』에서 자료 발췌 함.

<표 2> 마약류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규제법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명)		
				계	남	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마)	1,222	1,240	101.5	1,536	1,414	1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1,201	1,216	101.2	1,441	957	4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	2,999	3,124	104.2	3,940	3,350	590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 한특례법	9	8	88.9	14	12	2

2. 범죄별 범죄자 성별(단위 :명)

범죄자 성별 비율을 보면 대마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법률 위반 사범은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 차지하고 있으나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에서는 여성이 약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표 3> 마약류범죄자 성별 분류

규제법	계(A)	남	여(B)	(단위 : 명)	
				(B/A)×100	미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마)	1,498	1,372	99	6.6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1,174	531	634	54.0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	4,204	3,574	579	13.8	5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 한특례법	21	19	2	9.5	-

3. 마약류범죄자 직업별 현황

직업별 현황에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가 마약사범 329명, 대마사범 77명으로 다른 사업의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들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마 사범은 요식업 29명, 도소매업 23명 그 뒤를 이어 건설업 및 유흥업, 부동산업자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마약사범은 의료보건업 11명 무역업 8명 도소매업과 행상업자가 각각 7명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요식업자 및 차량정비업자가 5명, 3명을 차지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은 도소매업과 요식업자가 각각 5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유흥업자 49명, 농림수산업자가 40명, 노점업자 및 건설업자가 32명씩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마약류 범죄자 직업별현황(자영업)

(단위 : 명)

규제법	계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무역업	요식업	숙박업	유흥업	금융업	부동산업	의료보건업	차량정비업	노점	행상	기타사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마)	329	77	-	4	18	23	2	29	1	15	3	7	-	2	10	3	1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	422	340	1	1	2	7	8	5	2	1	1	1	11	3	1	7	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신성)	597	40	-	12	32	50	13	50	8	49	4	17	27	1	32	9	25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	3	-	-	-	1	-	-	-	-	1	-	-	-	-	-	-	1

고용자는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74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뒤를 이어 대마사범이 471명, 마약사범 122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사범이 3명을 차지하였다. 그 분포도 면에서는 피고용자 중 공무원이 각 사범별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원(사립)역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에 각각 2명씩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마약류 범죄자 직업별현황(피고용자)

(단위 : 명)

규제법	계	교원/사립	사무원	기술자	점원	공원	운전자	경비원	외판원	국공영기업체직원	일반회사원	금융기관직원	유흥업종사자	요식업종사자	일용노동자	기타피고용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마)	471	2	4	4	6	29	51	5	6	1	54	2	24	13	138	1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122	-	2	2	2	11	5	9	1	-	11	1	4	12	34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	746	2	7	17	14	22	41	1	13	1	86	2	112	24	138	26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 한특례법	3	-	-	-	-	-	-	-	-	-	1	-	1	-	1	-

사회적 지도계층이라 할 있는 전문직 종사자는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127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선에서 의약품을 다루는 의사가 대다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사범수 185명중 의사가 55명으로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 및 종교가 공무원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 전 계층에 확산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6> 마약류 범죄자 직업별현황(전문직 종사자)

(단위 : 명)

규제법	계	의사	교수	종교가	예술인	기타 전문직	공무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마)	38	-	1	2	5	30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20	11	-	3	-	6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	127	41	-	5	3	78	2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 특례법	-	-	-	-	-	-	-

2003년 마약사범중 주부와 학생이 96명과 34명을 차지하였으며, 무직자는 1,790명으로 총 6,897명 대비 2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7> 마약류 범죄자 직업별현황(기타)

(단위 : 명)

규제법	계	학생	주부	전(의) 경	공익요 원	무직자	미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마)	657	19	3	4	-	310	3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610	1	76	-	-	267	2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	2,732	13	17	2	1	1,203	1,49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	15	1	-	-	-	10	4

4. 마약류범죄자 내·외국인별 현황

내국인이 6,762명, 외국인이 135명으로 내국인 대비 2.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인이 23명, 러시아인 20명 그 뒤를 이어 캐나다인이 16명을 차지하고 있다.

<표 8> 마약류 범죄자 내·외국인별 분류

(단위 : 명)

규제법	계	내국인	외 국 인								
			소	중	미	러시아	일	필리핀	캐나다	인도	기
			계	국	국		본			네시아	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마)	1,498	1,428	70	-	14	12	4	1	13	-	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1,174	1,147	27	2	-	8	-	-	-	-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	4,204	4,166	38	6	9	-	1	5	3	1	1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 특례법	21	21	-	-	-	-	-	-	-	-	-

5. 마약류범죄자 전과관계

6,897명중 전과가 없고 초범인 경우는 1,112명으로 전체사범 대비 16.1%, 3범 이상인 경우가 2,284명으로 전체 전과자 대비 39.5%를 차지하였다. 특히 전과 9범 이상인 경우가 941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9> 마약류 범죄자 전과 관계

(단위 : 명)

규제법	계	전과 없음	소계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 이상	기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1,498	215	869	99	88	103	89	77	79	74	52	208	41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	1,174	621	179	81	39	11	15	7	8	3	1	14	37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신성)	4,204	286	1,841	175	132	171	148	132	126	113	130	714	2,077
마약류불법거래방 지에 관한 특례법	21	-	12	1	2	2	-	2	-	-	-	5	9

6. 마약류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전회처분의 결과는 기소유예가 93명, 집행유예 143명, 재산형을포함한 형집행종료자가 2,370명임을 알수 있다.

<표 10> 마약류 범죄자 전회처분 결과

(단위 : 명)

규제법	재 범 자															미상
	계	초범	소계	즉결심판	기소유예	선고유예	수배중	보호처분	집행유예	보석형집행정지중	가석방	형량료	집중	감호소출소	기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마)	1,498	1	870	1	27	-	11	2	59	2	-	600	-	168	6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1,174	5	183	-	13	-	2	-	4	-	-	135	-	29	9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	4,204	2	1,847	2	53	4	34	16	80	7	2	1,299	5	345	2,355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	21	-	12	-	-	-	-	-	-	-	-	3	-	9	9	

7. 마약류범죄자중 재범자의 재범기간

전체 재범자수 2,912명중 동종 재범자 수가 1,172명이고, 이종 재범자 수가 1,720명이고, 이중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1,847명으로 63.4%를 차지하고 있다. 동종이나 이종 구분없이 6개월 이후 및 1년 이내 재범자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1> 동종재범자의 재범기간

(단위 : 명)

규제법	계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마)	288	6	13	22	56	56	54	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9	1	-	-	3	2	1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	875	32	40	51	157	264	160	17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	-	-	-	-	-	-	-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의 동종 재범자가 없는 것과는 달리 이종 재범자가 12명으로 나타난 것과 동종 재범자는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에 치우쳐 분포된 경향이 있으나 이종 재범자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점 또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2> 이중재범자의 재범기간

(단위 : 명)

규제법	계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3년 초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마)	582	17	26	39	76	86	62	2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174	6	9	5	12	10	12	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	972	27	58	73	162	170	117	365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 특례법	12	-	1	2	2	1	2	4

8. 공범관계

마약사범은 전체 34%가 단독범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공범의 경우에는 256%로 이중 교도소 및 소년원 동료가 공범의 형태를 띠는 총 1,701명중 동네친구 158명에 이어 10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인관계에 있는 경우도 97명으로 나타났다.

<표 13> 공범관계

(단위 : 명)

규제법	계	단 독 범	공 범									미상
			소계	학 동	교 창	교 도 및 소년 원 동 료	직 장 동 료	친 인 척	동 네 친 구	고 향 친 구	애 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마)	1,498	603	481	32	3	29	8	74	31	8	296	4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1,174	665	127	-	-	1	5	5	1	2	113	3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	4,204	1,066	1,082	25	98	37	15	75	23	87	722	2,056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	21	1	11	-	3	-	-	4	-	-	4	9

9. 범행동기

범행동기는 유혹 10.4%, 이욕 8%, 호기심 5.3%, 부주의 2.7%, 우발적 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4> 범행동기

(단위 : 명)

규제법	계	이 욕							사행심	가정불화	호기심	유혹	우발적	현실불만	부주의	기타	미상
		소계	생활비마련	유흥비마련	도박비마련	허영·사치심	치부	기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마)	1,498	121	16	1	1	1	14	88	-	4	14	221	54	23	17	495	4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1,174	62	12	1	-	1	-	48	-	-	62	24	24	2	11	526	3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	4,204	365	79	9	-	1	30	246	8	11	15	54	54	22	53	993	2,05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 한특별법	21	-	-	-	-	-	-	-	-	-	-	-	-	-	-	12	9

10. 범죄자 교육정도별

마약사범의 교육정도를 보면 초등학교는 중퇴 2.1%, 졸업 6.6%, 중학교는 중퇴 5.9%, 졸업 8.7% 이며 고등학교는 중퇴 7.4%, 졸업 20.9%, 대학(전문대학과 일반대학 합산)은 졸업 6.3% 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15> 범죄자 교육정도별

(단위 : 명)

연도	교육 정도별	계	불취학	초 등 학 교			중 학 교		
				재 중	중 퇴	졸업	재 중	중 퇴	졸업
2003		6,897	386	2	145	458	-	408	599

고 등 학 교			전 문 대 학			일 반 대 학			대학원	기 타	미상
재 중	중 퇴	졸 업	재 중	중 퇴	졸 업	재 중	중 퇴	졸 업			
6	512	1,439	11	45	117	30	84	315	34	44	2,262

11. 범죄자 종교

범죄자중 종교가 없거나 미상인 경우가 69.4%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표 16> 범죄자 종교

(단위 : 명)

연도	종교별 계	유신론자							종교무	미상
		소계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기타종교		
2003	6,897	2,111	1,214	617	209	14	6	1,833	1,856	2,930

12. 범죄자 생활정도 · 혼인관계 및 부모관계

범죄자의 생활정도를 보면 하류 생활자가 41.2%(미상의 경우가 4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 중류 생활자가 15.6%, 상류 생활자가 0.15%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상황은 혼인관계자가 81.7%이며, 이중 유배우자가 3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7> 범죄자 생활정도 · 혼인관계 및 부모관계

(단위 : 명)

연도	생활 환경별 계	생활 정도				계	혼 인 관 계				
		하 류	중 류	상 류	미 상		소 계	유배우자	동 거	이 혼	사 별
2003	6,897	2,839	1,078	101	2,884	6,897	5,637	1,867	151	488	227

미 혼 자 부 모 관 계											
미 상	소계	실(양) 부 모	계부모	실 부 계 모	실 부 무 모	실 모 계 부	실 모 무 부	계 부 무 모	계 모 무 부	무부모	미 상
2,904	1,260	726	6	12	61	14	291	1	2	137	9

13. 범죄자 구속 · 불구속 조치사항

마약사범에 대한 검찰 처분은 2,349명 구속 송치(34.1%) 및 4,530명 불구속 송치(65.9%) 되었다. 특히 다른 마약류사범과는 대조적으로 대마사범의 경우 불구속 송치 처리보다 구속 송치 처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범죄자 구속 · 불구속 조치사항

(단위 : 명)

규제법	계	구속 송치	불구속 송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마)	1,498	782	7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1,174	51	1,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	4,204	1,515	2,68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 한특별법	21	1	20

14. 마약사범의 범죄자 마약류 상용여부

마약류 상용자의 범죄유형을 분석하여 보면 사기 233명, 절도 64명, 상해 43명 그 뒤를 이어 강력범죄로서 강도 20명, 강간 11명, 폭행 12명, 방화 5명, 살인 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9> 범죄자 마약류 상용여부

(단위 : 명)

위법 유형 상 용 마약류	살인	강도	방화	강간	폭행	절도	사기	상해	협박	공갈	채포 감금	폭력 행위 등
계	2	20	5	11	12	64	233	43	4	1	1	214
마 약	2	9	-	3	9	43	180	31	4	1	1	146
대 마	-	6	-	3	1	8	13	4	-	-	-	29
향정신성의약품	-	5	-	5	2	13	40	8	-	-	-	39
본드·신나등 환각물질	-	19	5	6	3	40	1	3	-	-	-	29

第 2 節 마약류 범죄의 최근 동향

1. 외국인 마약류 사범 증가 관련 동향

2003년 대검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미국인 23명, 러시아인 20명, 캐나다인 16명, 중국인 8명, 필리핀인 6명, 일본인 5명, 기타 57명으로 총 135명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9월말 현재까지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이란인 54명, 러시아인 37명, 중국인 32명, 미국인 12명 등 174명을 초과하여 마약류범죄에 있어 외국인 사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외국인 마약류사범 중 이란인에 의한 범행이 두드러지고, 러시아 중국인 사범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04. 03. 07~ 04. 29간 부산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논'성분이 들어 있는 '물까'를 남용하던 28명의 러시아인이 검거된 사례와 중국인 관련사건으로 강원도지방경찰청 마약계에서 2004. 04. 09 중국 조선족이 필로폰 70g을 밀반입하여 강원 원주지역에서 밀매 기도하는 것을 검거한 사례는 이들이 국내시장으로 진출한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내국인 마약류 사범 동향

최근 성인용품점 등에서 마약류를 최음제 등으로 속여 밀매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밀매수법이 늘어나고 있다. 그 예로, 전남 광주북부경찰서 마약반에 의하여 2004. 08. 24 태국산 야바 100정을 성인용품점 업주 2명에게 밀매하여 불법 유통시키다 검거된 5명이나 2004. 11. 1 전북과 대전 등지의 성인용품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 등 마약성분이 든 최음제를 밀매하던 2명을 검거한 전주지방검찰청의 사례가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라 마약류 사범의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05. 01. 01부터 2. 28까지 전체 마약류사범 428명이 검거되어 263명을 구속하고 165명은 불구속 처리되었다. 종류별 마약류사범은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필로폰 등 297명으로 전체의 69.4%를 차지하였고, 대마사범으로 대마초 사용자가 100명으로 전체의 23.4%, 그 뒤를 이어 마약사범이 헤로인 등 31명으로 7.2%를 차지하였다. 지방청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108명, 경기 50명, 경남 37명 그 뒤를 이어 인천 36명, 경북 34명, 충남 24명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동향으로는 2005. 02. 04 이란에서 필로폰 등 5Kg(시가 16억원 상당)을 밀반

입하여 서울과 경기 일대에 불법유통시킨 외국인 등 29명이 검거되었으며, 2005. 02. 04 중국산 필로폰을 국제항공택배 등으로 밀반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국제 마약밀매 일당 17명이 검거되었다.

第 6 章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우리 나라의 마약 중독자와 마약사범 관련하여 수사당국의 단속이 미치는 곳은 전체 마약 투약자의 5% 정도에 불과하며, 특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의하면 국내 마약 남용인구가 최소 3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IMF이후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향락적 사회풍조와 더불어 1999년에 이르러 마약류 사범이 1만명을 넘어서는 등 투약사범이 현격한 증가추세에 있음을 여러 통계자료에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는 거래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없는 마약범죄의 특성상 암수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공식적으로 검거된 사범 수 보다 거대하리라는 일반적인 추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과거 유흥업소 종사자나 사회 하층민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마약투약 현상이 최근 주부와 학생 및 회사원 등 평범한 중산층은 물론이고 사회적 지도층에 까지 확산돼 심신을 파멸시키고 있다. 이에 마약의 공급원 차단과 함께 재활시설 확충 등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은 아직까지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며, 장기적인 안목과 전망에 의한 근본적인 규제보다는 마약류 남용자를 구속하거나 처벌하는 형벌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마약류 투약자에 대하여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보다는 밀매, 밀수, 제조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미 4장에서 살펴보았던 우리나라 각종 마약류 규제법률 등 마약류 사범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벌정책을 폈음에도 마약류 사범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근절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이며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실효성과 성과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마약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第 1 節 법 · 制度的인 對應 方案

1. 법률의 정비 및 마약류 분류방법의 개선 필요성

우리나라 마약류 규제법규는 그동안 형법, 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의약품관리법 등의 개별법률에 의하여 분산 규제되어오다가 2000년에 형법을 제외한 3법을 통합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의사의 신고의무가 폐지되는 등 약물남용자의 처우가 개선된 점도 있으나 이 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 전 지적되었던 내용의 불일치나 처벌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보다는 관리차원의 편의를 위하여 용어의 통합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⁴⁶⁾ 그 단적인 예로, 대마의 매매 및 매매알선의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면서(제59조 제1항 13호),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및 매매알선의 예비 또는 음모는 처벌되지 않는 부분등에 대한 처벌의 불균형이 여전히 지적된다.

미국은 약물남용예방및규제종합법(Comprehensive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Act)에서, 영국에서는 약물오용법(Misuse of Drugs Act) 그리

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관보 제1406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마약수입업자 및 향정신성의약품의수출입업자를 마약류수출입업자로 통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용어와 관리의 통합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이고, 벌칙의 통합 조정에 관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으로 불균형에 대한 지적의 반영은 미미한 실정이다.

고 독일의 경우에는 마약법(Betäubungsmittelgesetz)에서 각각의 약물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류하면서 모든 약물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⁴⁷⁾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약물을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⁴⁸⁾ 전자의 경우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의 나라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소량의 대마초의 소지나 양도를 가볍게 처벌하면서 남용가능성, 의학용으로 사용되는 물질인가의 여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5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후자의 경우로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이 있는데, 독일에서는 약물을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는 약물의 위험성이나 중독성에 따른 약물의 구별을 하고 있지 않은 나라 중에서도 양형시에는 이러한 구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덴마크에서는 양이 상당히 많고 특별히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의 양도나 특별히 중한 사정 하에서의 약물의 양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검찰에서는 경찰관과 검찰에게, 대마초의 판매행위는 아편이나 LSD의 판매행위보다는 경하게 처벌되어야 하므로, 아주 소량의 대마초를 처음으로 판매하거나 양도했을 때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⁴⁹⁾

약물의 위험성에 따른 분류는 그 정도에 따라 형벌을 차등화 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위험성이 적은 약물의 오·남용은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시키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약물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법규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아주 위험한 약물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47)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 “현행 약물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p.77.

48) 대체로 위험성이 큰 약물로는 1)코카인, 헤로인, 2)암페타민과 같은 각성제, 3)향정신성의약품(LSD등) 등이 있고, 위험성이 적은 약물로는 1)대마수지가 제거되지 않은 대마의 모든 부분(종자는 제외) 2)대마로부터 채취된 수지, 3)해쉬쉬와 같은 대마 또는 대마수지를 함유하는 물질 등이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 “현행 약물규제법규에 관한 연구”, p.81.

49) 상계논문, pp.80-82.

감소시킨다고 하는 입장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분류에 반대하는 견해에 의하면, 약물의 위험성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은 아직 확립되지 못했으며, 대마와 같은 약물의 지속적인 사용은 대체로 보다 위험성이 큰 약물의 사용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⁵⁰⁾

약물을 마약, 아편, 대마, 향정신약 등으로 나누면서 위험성에 따라 형벌범위를 차등화하고 있으며 특히 대마를 소량 소지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있다.⁵¹⁾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해당 법상 분류는 약물의 위험성의 정도나 약리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고 편의상 분류에 지나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예로 위험성이 가장 적은 마약류에 속한다고 인정되고 있는 대마사범과 의존성과 중독성 등 위험성이 많은 향정사범에 대한 형벌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대마를 헤로인, 아편 및 메스암페타민 등의 마약류와 구별하여 위험성에 따라 개별적인 형벌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분류에 있어 새로운 형태의 마약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2. 치료보호제도의 보완

식약청등이 지정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전국 23개소로 지정병상 504개가 있어 연간 약 3,000여명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가 가능하나 2001년 마약류 투약자 전체인원인 7,167명중 자의에 의하여 입원한 48명을 포함한 201명만이 치료보호를 받아 치료율이 2.8%로 아주 저조한 편이다. 이러한 실적의 저조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50) 상계논문, pp.79-80.

51) 상계논문, p.82.

법규 그 자체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뿌리깊은 기존관행으로 인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약물에 노출된 경우가 아닌 마약류에 중독된 경우 사범당국의 일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 치료대상으로서의 중독자가 아니라 마약류 범죄자로 다루어지며 수사기관에 노출됨으로서 감수하여야 하는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탓으로 치료를 기피하고 있어 치료재활로 이어지기 어렵다. 또한 치료보호 대상인 중독자라 할지라도 중독증세에 따라 우선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결국 치료보호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검찰 스스로가 마약류 투약사범의 형사처벌을 완화하여 이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주고, 일정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마약류 투약자 치료시 재발방지를 위하여 치료 후 일정기간 동안 지속인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는 치료 후 1년간 사후 관리를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제 치료 후 사후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치료보호기관의 지정과 치료보호 조치 및 사후관리는 식약청에서 담당하고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령 및 정책수립과 마약중독자를 치료하는 정신의료기관의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등 조직과 업무의 이원화로 종합적인 치료와 재활의 대책수립 및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치료 후 2년간 사후 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을 강제사항으로 고치고, 현재 이원화 되어 있는 조직과 업무를 통합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3. 교정시설내의 치료체계 요구

현재 교정시설내 마약류 투약사범(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거의 미비하여 매년 마약류 사범의 재범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5장 마약류 범죄의 실태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83.9%정도가 재범자로 이중 3범 이상인 경우가 전체 재범자 대비 3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9범 이상인 경우가 전체사범의 13.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체계적인 치료보다는 단순 격리 위주의 교정시설 운영과 미결수에 대한 치료체계의 미비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약사범의 경우 구치소 수감 즉시 체계적인 치료를 받아야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구치소의 미결수에 대한 치료체계가 없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교정의 목적이 재소자가 정상적인 상태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데 있기때문에 교정시설 내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정신적인 의존을 치료하는 등의 재활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第 2 節 수사제도의 개선 방안

I. 전담 수사체제 운영 및 전문화

그 동안 마약류 범죄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공급차단 및 수요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회 구성원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마약류 투약자들의 투약 행태는 나날이 지능화 되어가고, 이들을 상대로 하는 공급방법 역시 더욱 은밀화 지능화 다양화 되고 있다. 이처럼 마약범죄는 영속성을 가지고 유기체가 성장하듯이 지속적으로 진일보하고 있는데 반하여 수사요원은 인사이동과 전문수사요원의 부족, 수사활동의 위험성으로 인한 동일부서의 기피현상으로 담당부서의 요원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않고 있으며, 마약조직의 음성적 점 조직화 및 때로 수반되는 폭력적 범죄, 최근의 유형인 마약거래

조직의 대형화 및 국제화로 장기간의 기획수사와 정보의 공유가 필요하나 수사기관의 분산으로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마약조직의 질적 양적 규모와 관련 공과의 다툼이 앞 설 경우 수사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제기되며 특히, 검·경의 수사상 상명하복과 관련하여 검찰의 경찰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나 보강수사 등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 세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 통합적 “마약범죄 전담 수사체제”를 만들어 운영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부족한 수사요원의 충원과 이들의 전문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실무교육과 해외연수 등을 통한 직업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에게 인사 및 근무여건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실무차원에서 검토하여 제도화하는 등 마약조직의 국제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II. 수사기법의 개발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수사방법은 법적 근거의 미비와 과학적 수사장비 도입에 따른 예산의 부족으로 여전히 전통적인 수사기법에 의존하고 있다. 마약범죄가 국제적 양상을 띠고 수법이 다양화 지능화 됨에 따라 정보의 확보가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장비의 도입과 수사요원의 독자적인 수사기법 개발을 위한 꾸준한 연구자세가 필요하다. 이와는 별도로 사생활의 침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청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수사 등을 허용케하는 법적 근거마련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第 3 節 실질적인 예방·홍보활동의 필요성

필자는 필자가 근무하였던 경기도 안성경찰서 관내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과 지식의 정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중 2개교의 중학생 100명과 3개교 고등학생 100명이 참가하였다. 방법은 하교길 무작위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해당사항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1. 마약류 중독의 폐해성과 예방에 대하여 교육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조사대상자 중 중학생 전체 응답자는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고등학생은 2개교 20명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중 1개교 10명은 학교에서 60분 교육을 받았으며, 다른 1개교 10명은 학교에서 100분 교육을 받았다고 하였다.

2. 마약류의 폐해와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가요?
라는 질문에 중학생 41명과 고등학생 13명이 “있다”고 대답을 하였으며, 이중 중학생 3명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사실 있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51명은 텔레비전 광고를 통하여 경험하였다고 대답하였다.

3. 마약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전체 168명이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하였고, 32명은 조금 안다고 대답을 하였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약에 대하여 대단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하여 대단히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고 선도하여야 할 경찰관의

로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마약류 투약등에 대한 예방 및 홍보전략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의 제고이다. 소수 집단에 의한 일회성 홍보가 아니라 많은 일반인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예방과 홍보 활동이 되도록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겠다.

第 4 節 국제적 협력제제 구축

88유엔 협약처럼 마약범죄는 어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국가와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라는 인식하에 마약범죄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관련국가간 신속한 정보교환과 폭넓은 수사공조 체제의 구축을 포함한 지역간 적극적인 협력과 각종 국제기구의 결의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第 7 章 結論

마약류 사용은 딱 한 번만의 유혹으로 시작되지만 한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어렵다. 지금까지 우리는 몇몇 문제가 있는 특정인들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았으나 앞에서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의 실태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그 달콤한 유혹에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들이 마약류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마약투약사범으로 검거되었던 장모씨에 의하면, 처음에는 호기심에 빠져 투약하게 되었으나 처음 투약한 후 당시의 쾌감을 잊지 못하고 계속 투약하게 되었으며 이 쾌감이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짜릿하였으며 이러한 쾌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하여 호기심을 자극하였다고 한다. 특히 마약을 한 번 투약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투약하게 되는 원인과 모든 것을 포기한채 마약투약을 고집하는가라는 질문에 경험자들은 “필 이 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로 그들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하였던 쾌감을 일컫는 말로서 인간에게 그 이상의 쾌감이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광렬한 느낌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투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그 들이 주장하는 필(쾌감)이라는 것은 성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을 띤 쾌감으로 첫 느낌에 따라서 그 후 투약하였을 경우의 느낌이 틀려진다고 한다. 또한 어떤 사람은 마약류를 투약하는 주변사람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호기심이 생겨 투약하게 되어 중독된 사례도 있다. 마약류를 왜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얻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살을 빼기 위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던 일부 주부와 미성년자의 경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겠다. 밥도 먹지 않고 하루에 2시간 정도 밖에 수면을 취하지 않아 살이 빠져 처음에는 좋았으나 나중에 중독이 되어 버린 경우다. 이 경우, 지속적으로 투약하면서도 자신은 중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마약류 투약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이다.

또다른 이유중 하나가 바로 ‘자신은 중독되지 않을 것이라는 오신’이다. 이러한 호기심과 오신은 마약류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제5장 마약류범죄 분석에서 범행동기별 내용에서 유혹과 호기심으로 인한 경우가 전체의 15.8%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무지가 마약류를 투약하게 하는 커다란 이유가 되는 셈이다. 이에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지식홍보와 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겠다. 또한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 단속 및 수사의 분산화로 인하여 전문성의 약화 및 정보공유의 미흡으로 효과적인 단속의 실패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의 강구가 있어야 하겠다.

그러므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최소한의 대처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일반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예방 및 홍보교육 실시의 필요성이다.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을 주관하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에 대한 각종 예방 교육 및 치료재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일선 학교간의 적극적인 협조체제 유지와 불량학생들

을 대안학교로 흡수하는 등 적극적인 선도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시민단체에 의한 마약류 추방운동도 적극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마약의 사용이나 마약조직을 미화하는 각종 매체물로 인해 청소년들이 쉽게 마약류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매체물 역시 또다른 마약범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말해주듯이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일선 학교에서의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설사 교육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형식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기회가 된다면 누구든지 마약류에 빠져들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같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역시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로 갈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학교내 예방 및 홍보교육이 형식적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마약류 예방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학교내에서 마약 전담 경찰관이나 관련 전문가에 의한 정기적인 교육의 도입이 요구된다.

시민단체에 의한 마약류 추방운동 캠페인 역시 일정 지역·구역내에서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 마주칠 수 있는 거리로 나서는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부 엘리트와 소수집단에 의한 캠페인이 아니라 일반인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노상에서 마약류의 폐해와 예방·홍보와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순회 전시하는 방법을 택하여 거리로 나서는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정시설 내에 복역중인 전체마약사범의 70%정도를 차지하는 단순 투약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정책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다. 이와 관련

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정책의 체계적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치료기관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확보, 치료보호제도의 보완 및 활성화에 대한 문제, 교정시설 내의 중독자 치료 등 치료·재활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이러한 논의는 실무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제5장의 범죄자 전과관계에서 초범의 경우가 16.1%이고, 전과가 있는 경우가 83.9%로 대부분의 마약류 사범이 재범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과 9범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13.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교정시설 내에 복역 중인 마약류사범에 대한 처우와 교정시설 내 처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정책의 실무상 도입이 시급히 요청된다.

셋째,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마약류 사범에 대해 장기적이고 치밀한 정보수집과, 비호세력을 배제할 수 있는 마약범죄 수사 전담체제(task force)의 설치 운영과 수사요원에 대한 전문화의 필요성이다. 또한 경찰과 검찰, 세관 및 국가정보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마약수사 역시 책임있는 기관에 의하여 통합조정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에 마약수사대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위한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의 이러한 노력은 마약사범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은 물론이고, 향후 마약범죄에 대한 종합적이고 책임감 있는 통합적 수사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넷째, 최근의 급속한 마약류 확산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그 대책으로 관련부처 상호간 유기적 협조체계 및 종합적인 정책조정을 책임지고 관리·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 기구의 신설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의 마약류관리정책은 정부의 각 부처마다 분산되어 집행되고 있어 정책의 집행의 효율성의 저하 및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수급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비효율성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약류정책에 대한 각 유관기관의 역할을 조정하고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책임있는 통합적 기구의 신설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한국을 거점으로 일본과 중국을 연계하는 이른바 ‘백색의 삼각 지대(white triangle)’ 형성과 관련한 아시아권의 마약범죄의 국제화 현상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간 마약범죄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국제 형사 기구 설립과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공조수사를 펼쳐야 하며, 국가간 정보공유, 수사기법 전수 등으로 마약범죄의 국제적 확산과 연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國內)

- 김대근(1999), 『마약과 약물남용』, 서울 : 북스힐
- 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1990), 『마약문제의 실태와 대책』
- 대검찰청(2003), 『마약류 범죄백서』
- 대검찰청(2004), 『마약류 범죄백서』
- 대검찰청 마약부(<http://www.drugfree.or.kr/>)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심리과 범죄분석실(2003), 『범죄의 심리학적 분석』, 서울 : 삼일인쇄산업
- 유영찬(2002), 『법과학과 수사』, 서울 : 현암사
- 이부영(2002), 『분석심리학』, 서울 : 일조각
- 원사덕,이현경(2004), 『약물남용 예방론』, 서울 : 계축문화사
- 2001년도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심포지움(<http://www.drugfree.or.kr/>)
- 지그문트 프로이트 지음:윤희기,박창부 譯(2004),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서울 : 열린책들
- 최신정(2003), 『술·담배·마약』, 서울 : 광야
- 캘빈 S.홀 지음:백상창 譯(2000), 『프로이트의 심리학』, 서울 : 문예출판사
- P.E.샤본느 지음:이승덕 譯(1990), 『마약』, 서울 : 성바오로출판사
-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2002), 『21세기 한국마약정책의 새방향』, 서울 : 제일인쇄사
- 한국국제마약학회(2004) 『마약연구』 서울 : 제일인쇄사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2002) 『한국의 마약퇴치 정책연구』 서울 : 다물기획

홍성열(2003) 『김대근(1999), 『마약과 약물남용』, 서울 : 북스힐
 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1990), 『마약문제의 실태와 대책』
 대검찰청(2003),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2004),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마약부(<http://www.drugfree.or.kr/>)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심리과 범죄분석실(2003), 『범죄의 심리학적 분석』, 서울 : 삼일인쇄산업
 유영찬(2002) 『법과학과 수사』, 서울 : 현암사
 이부영(2002) 『분석심리학』, 서울 : 일조각
 원사덕,이현경(2004) 『약물남용 예방론』, 서울 : 계축문화사
 2001년도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심포지움(<http://www.drugfree.or.kr/>)
 최신정(2003) 『술·담배·마약』, 서울 : 광야

검찰청(1993) 『마약류 및 조직범죄의 현황과 대책』
 서울지방경찰청(1999) 『韓國 組織暴力의 實體』

2. 學位 論文(國內)

김선복(2000) “현행 마약류법에 대한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선심(2000) “우리나라 약물남용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예방,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단국대 행정대학원
 강신숙(1999) “마약류 밀수단속을 위한 관세청의 운영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대식(1993) “한국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 조직범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영화(1998) “마약류범죄의 실태분석과 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창균(1992) “비범죄화 정책에 관한 이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김창균(1995) “국가안보 위협요소로서 국제조직범죄에 관한 고찰” 연세대학
교 행정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민성기(2002)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백청수(1999) “마약류남용의 현황과 통제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이 삼(2000) “마약류범죄수익의 몰수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이병기(1994) “마약류 사범의 실태 및 대책” 『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1호(통
권 제17호)』

이병호(1993) “마약류사범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고찰” 한양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유병열(2001) “마약범죄 퇴치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마약범죄학회

유인창(1991) “마약류사범의 실태와 대책”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현경(1995) “한국 마약류사범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성재(2003) “한국 마약범죄와 국가 마약정책에 대한 연구:해방 후 박정희
정권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유남식(1996) “국제조직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과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치석(1997) “국제조직범죄의 국내침투 실태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진곤(2000) “마약범죄와 시민의 역할”, 한국마약범죄학회
- 손동권 “마약류남용에 관한 범죄론적 소고”
- 송방식(2002) “마약류 수형자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 조성권(2002) “마약, 21세기 정치학의 새로운 이슈”, 한국국제정치학회
- 전준열(1993) “한국의 조직폭력범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운(1996)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진호(2000) “교정시설내 마약류 사범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계명대 정책대학원
- 하근수(2000) “마약류 수형자의 치료 재활”, 한국교정학회
- 한인복(1999) “한국 마약류사범의 실태와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대학원

3. 學術誌, 雜誌(國內)

- 강구진 “집단범죄와 그 대책”, 「경찰고시 통권 제210호」, 1982, 4.
- 김영종 “사회적 갈등과 집단행태 및 조직적 범죄의 원인분석과 예방전략”, 「교정」, 1989, 5.
- 신의기 “국제조직범죄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수사연구」, 1998, 2.
- 오선주·유인창, “약물조직범죄에 대한 규제방안” 「청주대법학논집 제14호」, 1998, 12.
- 이홍섭 “이행기 러시아의 사회병리 현상 : 조직범죄의 성행”, 「한양대학교

- 아태지역동향」, 1999, 4.
- 조균석 “범죄수익 바탕을 위한 입법론” 「형사정책연구」, 1992, 가을.
- 조선희 “조직범죄단속을 위한 국제공조” 「형사정책연구 제18호」, 1994, 7.
- 조성권 “카지노 자유화의 문제점 : 조직범죄의 시각에서” 「정책연구」, 2000, 5.
- 조승식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 「검사세미나 연수자료집 12」, 1992.
- 조병인 “세계화 겨냥하는 조직폭력의 검은 실체” 「새물결」, 1996.
- 조병인 “유엔의 국제조직범죄 단속전략” 「수사연구」, 1996, 5.
- 최병민 “우리나라의 조직폭력 변천과정” 「수사연구」, 1998, 10.
- 최명숙 “조직범죄의 역사” 「충북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27호」, 1984, 6.
- 최인섭 “조직범죄의 특성과 실태” 「형사정책연구 제18호」, 1994, 7.
- 치안문제연구소 “미국의 경찰 ; 조직범죄대책” 「치안문제」, 1993, 5.
- 허준영 “한국에서의 조직범죄” 「수사연구」, 1999, 12.
- 허경미 “조직범죄수사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교 논문집 제19호」, 1999, 12.
- 허경미 “국제사회의 조직범죄 대응전략 및 한국의 관련정책상 한계점” 「수사연구」, 2000, 4-6.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유엔의 국제조직범죄 규제방안” 「형사정책연구집」, 1997.

4. 外國 文獻(日本, 美國)

法務省 法務總合 研究所, 「犯罪白書」, 東京 : 大藏局 印刷局, 1982.

本田守弘, [麻薬新法における犯罪規定], ジュリスト(1991.12. 15) No.992, 77
頁

法務総合研究所編, 犯罪白書 平成7年版(1996) 第4編

藤本哲也, [刑事政策概論], 青林書院 1994. 345 頁

Abandinsky Howard., 1999, *Organized Crime*, 3rd, Chicago ; Nelson-Hall Inc.

Albanese Jay., 1989, *Organized Crime in America*, 2nd ed, Cininnati;Anderson.

Albini Joseph., 1971, *The American Mafia:Genesis of a Legen*, New York.

Frank Schmallegger, PH.D, 1996, *Criminology Today*, Prentice-Hall.

Hugh D. Barlow, *Introduction to Criminology*, Little, Brownand Company

Lyman, Cichael D./Potter, Gray/Lyman, Michael D./Potter, Gary W.,1999,
Organized Crime, Prentice Hall.

Leonard Glick, 1995, *Criminology*, Allyn and Bacon.

Levin Howard, 1999, *Journal of Critical Justice : Reflections on Organized Crime*,
Blackwell.

Wilker, Josh/sarat, Austin(Edt), 1999, *Organized Crime(Crime, Justice, and Punishment)*,
Chelsea House Pub(L).

ABSTRACT

A Study on Conditions of Drug-related Crimes and Counter-Measures

Choi, Jeong Il

Major i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Addicts

Dept., of International Narcotic Studies

Hansung University

Korea has been reputed relatively as drug-safe country in comparison with the United States, Japan and other countries. INCB has also appreciated Korea as 'a country checking narcotics successfully'. However, due to the social unrest since the IMF bailout program, smuggling of new drugs has increased rapidly, while drug criminals including students and housewives tend to increase recently. Thus, Supreme Prosecutors' Office established Dept., of Narcotics in 2001, followed by National Police Agency who established Division of Narcotic Crime Investigation in 2002 to reinforce the investigation capacity against drug-related crimes, but these crimes have not yet been rooted out. Recently, many researchers argue that drug addicts should be treated rather than punished, but such arguments are little heard in investigation or prosecution practices. In particular, the government published 'a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to root out drug uses' and thereby, considers introducing a prosecution or execution suspension system for simple drug users rather than arrest and punish them. However, since the current 'Drug Addicts Treatment and Protection Code' recommends checking and counselling after a complete treatment, the legal system need to be rearranged. On the other hand, since second and more offenders account for 84% of drug-related criminals, it is required of relevant authorities to expand their prevention and publicity activities in terms of both quantity and quality, while integrating and professionalizing th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s for students operated by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Youth Protection Committee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prevention programs operated by schools are focused only on drink and smoking as drug misuse/abuse, and even such programs are not substantial.

On the other hand, since drug-related crimes are investigated into by multiple authorities including police, prosecutors, customs offic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Food & Drug Administration, larger-scale and international drug deals are not effectively checked. Even in a long-term planned investig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inter-organizational cooperation may not be feasible if they conflict with each other for merits, much less saving of budget and manpower.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it is deemed necessary to establish a 'drug crime investigation task force', educate the investigators to be more professional and thereby, enhance the capacity of drug crime investigation. In

particular, it is also deemed necessary to consider authorizing the police with a nation-wide network of huge forces to investigate into crimes including drug crimes.